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0일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하여야 할 사람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추천자 중 고용 하여야 할 인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추천 대상자 명단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면허
	전공		고용 직종
붙임 :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 1부.			
※ 유의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업체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한 경우를 포함) 추천자 중에서 고용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는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선정 대상자가 없거나 그 인원이 고용 의무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